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돈까스찬치]

정보공개서

(주)에프씨천상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7068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7.06.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2.29.

(주)에프씨천상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97, 3층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 1588-5862 | Fax : 02-790-321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http://franchise.ftc.go.kr>)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 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에프씨천상	돈까스잔치 외2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97, 3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0.08	2009.10.09	박순임	1588-5862	02-790-3219
	법인등록번호	110111-4194132	사업자등록번호	101-86-50146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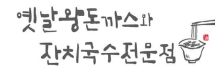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이사	박순임/㈜에프씨천상	돈까스잔치 외 2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97, 3층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박순임	1588-5862	02-790-321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임원)	장 민/㈜에프씨천상	돈까스잔치 외 2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97, 3층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박순임	1588-5862	02-790-321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돈까스잔치	돈까스와 잔치국수 등을 접목한 브랜드로 즐겁고 넉넉한 잔치의 의미도 가지고 함께 지니고 있음.
상 호	돈까스잔치 00점	상호와 지역명칭을 함께 설정하여 지정함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제 40-1422288호
		상표 등록번호: 제 40-1238583호 *순심이네 단팔밥 *복합 타입 매장 운영시 사용가능(선택형)
		심플타입 로고
		정사각타입 로고
광 고		서브 타이틀 로고
		국수 캐릭터
		순심이네 단팔밥 캐릭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2 / 재무제표 첨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826,257	9,185,604	2,640,652	7,905,841	318,260	111,582
2022년	11,734,720	8,989,872	2,744,847	8,714,935	410,887	104,195
2023년	11,878,263	9,030,730	2,847,533	8,670,887	601,094	102,686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7.48%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이태원천상, 돈까스잔치) 외, 물류공급업, 임대업, 음식점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물류매출액과 로열티로 구성됩니다.

당사가 추정한 각 가맹사업 영업표지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물류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과 대비하여 7.48%에 해당하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중 이태원천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물류매출액은 39%이며, 돈까스잔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물류매출액은 61% 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의 표에서 나타난 금액 정도로 추정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순임	대표	2001.09. ~ 현재	이태원천상 이태원본점 대표	점포 운영
			2009.10 ~ 현재	(주)에프씨천상 대표이사	회사 운영
	장 민	감사	2009.10. ~ 현재	(주)에프씨천상 감사	회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에프씨천상	가맹사업 경영	2010.12~현재	이태원천상(등록번호: 20100100171) 이라는 영업표지의 이자카야 일식 주점업 경영
				우동텐(등록번호: 20110100088) 이라는 영업표지의 우동 전문 일본식분식집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돈까스잔치 (상표권) *텍스트초안	서비스표 (제43류)	2014.02.20. 출원	출원 제 2014-0006296호	박순임	2024.12.10
		2014.12.10. 등록	등록 제 41-0306771호		
돈까스잔치 (상표권) *정식로그타입	서비스표 (제43류)	2018.03.30 출원	출원 제 40-2018-0042033호	(주)에프씨천상	2028.11.30
		2018.11.30 등록	등록 제 40-1422288호		
순심이네 단팻빵 (상표권) *선택시사용가능	상표권 (제30류)	2016.07.13 출원	출원 제 40-2016-0053033호	(주)에프씨천상	2027.03.09
		2017.03.09 등록	등록 제 40-1238583호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상표권자(주식회사 에프씨천상 대표이사 박순임)로부터 상표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돈까스잔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7년 6월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5년 11월 10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프씨천상	돈까스잔치	박순임	2017.06 ~ 현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97, 3층

3. 『돈까스잔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돈까스잔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돼지고기 소면(돈가스류, 국수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돈까스잔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5	3	7	4	3	6	3	3
서울	3	2	1	2	1	1	3	2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1	1	-	-	-	-
경기	3	1	2	3	1	2	3	1	2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돈까스잔치』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	3	-	1	-	5
2022	5	-	-	1	-	4
2023	4	3	4	-	-	3

6. 『돈까스잔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돈까스잔치]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에프씨천상	이태원천상	20100100171	일식	6/0	5/0	4/0
가맹본부	(주)에프씨천상	돈까스잔치	20170686	한식	5/3	4/3	3/3
가맹본부	(주)에프씨천상	우동텐	20110100088	기타외식	0/0	0/0	0/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돈까스잔치』 가맹점사업자가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석참조
서울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가맹점 3곳의 실제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평균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돈까스잔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당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	9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돈까스잔치』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비	비공개	비공개	67,701	67,701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이태원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02-793-70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점예치제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에프씨천상** 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치 방법 및 예치 신청서는 첨부한 별첨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돈까스잔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돈까스잔치는 매장 규모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Type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press-Type : 99㎡(30평)기준 / **Standard-Type** : 264㎡(80평)기준

(단위: 만원 /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Express	Standard			
합계	1,000	1,500	-	-	-
가맹비	500	1,000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운영매뉴얼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00	500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개시 전 : 전액반환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지급기한 : 계약체결일

2) 보증금액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Express	Standard		
합계	500	500	-	-

계약이행 보증금	500	500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초도물품금액 미수 등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	-----	-----	--	---

▶ 지급기한 : 계약체결일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만원 / 부가세포함)		비고
	Express	Standard	
합계	1,500	2,000	
가맹비	500	1,000	
교육비	500	500	
계약이행보증금	500	5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Express-Type : 99㎡(30평)기준 / **Standard-Type** : 264㎡(80평)기준

(단위: 만원 / 부가세포함)

구분	Express		Standard		지급 기한	반환조건
	금액	3.3㎡당 금액	금액	3.3㎡당 금액		
총계	9,700	324	22,900	286		
인테리어	6,000	200	16,000	200	- 계약시: 착수금 50% - 시공일로 2주차: 중도금 40% - 시공 완료일: 잔금 10%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	1,800	60	3,700	46	- 발주시: 50% - 설치완료시: 잔금 50%	개점 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주방집기	1,200	40	1,700	21		
간판/사인물	500	17	1,000	13		
디자인물	200	7	500	6		

▶ 지급대상 : 가맹본부

▶ 별도항목 : 철거/외부공사/화장실공사/닥트시설/샤시공사/가스시설/냉.난방시설/전기증설/소방관련 사항 및 각종 인.허가/여닝천막/폴딩도어/조명공사/의탁자 및 제작가구/점포외부공사/조경공사/초도물품/컨셉 외 시설/추가홍보비 등

▶ POS System : 본부 ERP System 필수 설치

- ① 위 표의 금액은 점포 개설시 평균치를 상담 자료로 제시된 금액으로 매장의 형태,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시 세부 사항은 별도 제시합니다.
- ②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역에 따라 오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평)당 30만원(₩300,000/부가세별도)을 가맹 계약 후 10일 이내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당사의 사업을 이해하는 자 - 외식분야에 열정을 가진 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	- 만18세 이상일 것 - 당사 교육과정에서 기준평가 점수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광고시행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광고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3일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로열티	가맹본부	*Express : 월 30만원 *Standard : 월 포스 매출액 1%	익월 5일	-	가맹점 매출액 발생 시에는 반환불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1)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2)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전	교체.보수한 후에는 반환 불가
점포환경 개선비용	-	-	-	-	해당사항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1)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간판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의 가맹점 3곳은 실제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2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물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돈까스잔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에프씨천상]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Express	Standard	
가맹비	-	-	(양도인의 잔여기간 인정)
교육비	500	500	-
계약이행보증금	500	500	부가세없음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된 상품의 완전물에 한하여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 배상액

당사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철거·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귀하는 조치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액을 1일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원)의 비율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주요품목이란 가목에서 기재한 구입요구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돈까스잔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돈까스잔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동까스잔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왕돈까스	가맹점주 임의로 메뉴를 추가, 변경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1회 위반: 서면시정 요구 2회 위반: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물류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	2022년 12월 기준
치즈듬뿍돈까스			
통통돈까스			
생선까스			
모듬정식			
잔치국수			
국물비빔국수			
돈잔국수			
돈비국수			
냉모밀			
돈까스모밀			
숯불고기 국수			
숯불고기 비빔국수			
돈까스카레			
순심이네단팔빕			
순심이네 크림단팔빕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만 19세 미만 고객	주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위반: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Express 타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옛날돈까스	10,500	변동 사항이 있을시 서면 공문 및 포스를 통해 공지	2022년 12월 기준
잔치국수	7,000		
돈잔국수	9,000		
국물비빔	8,000		
돈비국수	10,000		
냉모밀	8,000		
돈까스모밀	10,000		
순심이네단팔빕	3,500		
순심이네 크림단팔빕	3,500		

상품명(Standard 타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왕돈까스	12,900	변동 사항이 있을시 서면 공문 및 포스를 통해 공지	2022년 12월 기준
치즈등뼈돈까스	15,000		
통통돈까스	14,000		
생선까스	13,000		
모듬정식	16,000		
잔치국수	7,000		
국물비빔국수	8,000		
돈잔국수	10,000		
돈비국수	11,000		
냉모밀	9,000		
돈까스모밀	12,000		
숯불고기 국수	10,000		
숯불고기 비빔국수	11,000		
돈까스카레	12,000		
순심이네단팥빵	3,500		
순심이네 크림단팥빵	3,5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까스 또는 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종	돈까스잔치	해당사항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 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돈까스잔치』 영업표지 이
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돈까스잔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
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
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66	94.34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돈까스잔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
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 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 2항
○ [돈까스잔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34조 1항
○ 당사의 서면 승인 없이 가맹점의 표시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4조 1항
○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34조 1항
○ 당사의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거나 당사의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4조 1항
○ 월 로열티 및 공급품의 대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34조 1항
○ 개점 이후 약정된 수시교육 및 재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당사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함으로써 당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34조 1항
○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4조 1항
○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34조 1항
○ 당사 직원(슈퍼바이저)의 영업상태 점검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권유품목'의 품질기준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권장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공급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 또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4조 1항
○ 해당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품목' 및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을 당사의 승인없이 자점매입을 한 경우	34조 1항
○ 해당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당사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34조 1항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당사의 동의 없이 지정한 복장을 미착용한 경우	34조 1항
○ 당사의 사전통지 없이 규정된 영업시간을 미준수한 경우	34조 1항
○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34조 1항
○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4조 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광고비 분담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34조 1항
○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촉활동을 하거나 팜플렛,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등을 제작하여 「돈까스잔치」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34조 1항
○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명의변경, 위탁 경영을 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 3항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4조 3항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 3항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4조 3항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34조 3항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34조 3항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 3항
⑧ 귀하가 뚜렷이 중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 3항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3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또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결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와 양도자 잔여기간의 양수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를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고의로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귀하가 귀하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④ 귀하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할 경우

에는 신규가맹 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로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교육수로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돈까스잔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돈까스잔치와 동일한 메뉴군의 음식 판매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본사 (1588-586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돈까스잔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권장)	주6일 이상, 월 25일 이상, 연속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7일 전 서면으로 사전승인 득한 후 휴업 가능)	문의: 당사 운영팀 (1588-5862)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후 11시 또는 12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및 아르바이트	건강검진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돈까스잔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광고비 50%	광고 세부계획 → 귀하에게 통지 → 광고비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50%	중 가맹점수에 따른 분담	부담내역을 귀하에게 광고실시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 → 귀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납입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홍보 (전국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수에 따른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	
지역단위 광고 및 개별광고	해당매장 매출 활성화	없음	100%	원칙적으로 귀하의 부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당사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역단위 및 개별 광고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쿠폰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작 비용은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중 위약금 관련 전문]

-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 삼천만원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 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3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돈까스잔치』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 오백만원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 오십만원 (₩500,000원)씩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위약금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8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192,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또는 불가통보	D-4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45~43	가맹금 5,500 /교육비 5,500 / 계약이행보증금 5,000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3 ~ 38	
중도금 지급	- 공사착공에 앞서 중도금 납입	D-38~37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7	176,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1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구하는 점포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사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오픈이벤트	가맹점 오픈시 판촉물 추천 및 관련디자인시간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시 1회	무료	
키워드 광고	해당 가맹점 홍보 키워드 광고(네이버)	오픈 가맹점	오픈 후 한달	본사지원	지역맞집 외 유동적
온라인 홍보	포털등록 3곳 지도,매장안내, 네이버등록, 전화여플등록 등	전 가맹점	계약기간내	무료	네이버/다음/구글/네비업체/전화여플업체 등
인력지원	오픈시 인력 지원	전 가맹점	오픈일 포함	무료	주방 및 홀 /

	및 교육		5일 이내		포스교육
--	------	--	-------	--	------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본사 제작 관련매뉴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돈까스잔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상당시 가맹점 사업자의 자금운용을 위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돈까스잔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돈까스잔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40시간)	500	점주 & 조리담당자1인+출담담당자1인
수시교육	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	100% 부담(실비)	
특별교육	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	100% 부담(실비)	
재교육	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	100% 부담(실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0조에 따라 개점이 불허 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 26조에 따라 수시 교육 및 재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시에는 가맹점운영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제 7조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불참 할 시에는 가맹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용산 동빙고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97, 1층
2	경기	의정부 녹양점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852, 1층
3		용인 마성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석성로 862,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오픈일)
6년	용산 동빙고점: 2015-11-10 의정부 녹양점: 2017-01-16 용인 마성점: 2020-11-24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307,136	POS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02-741-783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필수품목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필수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역 중 공급업체 권유품목을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2. 가맹본부 재무자료(2021~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가맹금 예치 신청 안내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안내

✓ 빨간 체크표시를 따라 진행하세요!



증명서발급서비스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출력 연말정산/납입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공제센터 가입상품조회 소득장제상금신청 증명서발급	전액면내서비스 예금전액면내서비스 공적자산액조회서비스	전자어음서비스 전자어음수취배서 전자어음보통 전자어음사고등록 조회
국민주매채권서비스 채권간별매입 채권대입매입 채권대입내역 조회 수납영수증 조회 채권 변경/취소	가맹금예치서비스 ✓ 가맹점사업자서비스 가입 ✓ 가맹점사업자 등록정보 조회/변경 예치금상대 조회/변경 서비스해지 예치정보조회	시요로기채권감면어부조회	금융거래종합보고서 금융거래종합보고서



가맹점사업자서비스 가입

1 약관동의 2 3

신한 가맹점 예치 서비스 이용약관

보기 ✓

위 약관에 동의 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다음 ✓

